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220
------------	-----

발의연월일: 2006. 2. 17.  
발 의 자: 오인영의원외 5인

## 1. 제안이유

각 기금별로 자금을 운용·관리함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사업수행에 한계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자금의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운용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1) 각 기금의 보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각 기금별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안 제1조)
- 2)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용자 등의 사업의 용도로 운용됨.(안 제6조)
- 3)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기금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하 “존속기한”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  
으로부터의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4. 지방채 상환 및 협력기금에의 예치
5.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7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③ 통합관리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 구금고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통합관리기금의 예수 및 응자조건, 예수금 및 응자금의 이자계산, 원리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기금의 응자대상사업 선정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5. 이자율·상환방법 등 응자조건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2.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인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인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

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예탁자금 중 당해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